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행정제재, 민사구제 신설 등〉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6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총괄 검토	6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취지	6
나.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10
다. 유사 법률안과의 비교	22
라. 개정안과 현행 기술보호법제 비교	25
마. 관계 부처 의견	28
2. 조문별 검토	32
가. 제명 및 총칙	32
1) 제명 및 목적	32
2) 정의규정	3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

나.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42
1) 의무사항	42
2) 서면의 발급 등	48
3) 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5
4) 벌점의 부과 및 교육명령 등	63
5) 과징금	66
6)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69
다.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 조성	72
1) 기술 임치제도	72
2) 피해 입증 지원 및 피해회복 지원	75
3) 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78
라. 분쟁 조정 및 중재	79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0
마.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	90
1) 금지청구권 등	90
2) 손해배상책임	93
3) 손해액의 인정 등	96
4)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104
5) 자료제출명령	106
바. 보칙	112
사. 벌칙	114
아. 부칙	119
IV. 참고자료	1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7.
3. 회 부 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201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 체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이 일정한 수탁·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이 달라져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반환·폐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한 기술 요구와 사용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신기술 또는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 관련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신기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행정조사 권한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 기업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

나.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분쟁 조정 및 중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보칙, 벌칙 8개의 장(章)으로 구분

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 1) 중소기업기술의 제3자 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 사용·공개·제3자 제공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정의
- 2)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를 정의
- 3) 수탁기업,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의무 신설(안 제9조)

-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의 반환·폐기 요청 또는 계약·협상 등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미조치 행위 및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2) 이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금지

마. 서면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안 제10조)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및 위탁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중소기업이 기술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식 개선(안 제11조)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 개선

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보복행위,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 2)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감면 및 교육명령 규정
- 3) 보복행위, 수탁·위탁거래관계 또는 대기업·스타트업 관계의 기술침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아. 피해 입증 및 회복의 지원(안 제31조부터 제32조)

- 1) 손해액 산정 지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 사업 근거 마련
- 2) 피해회복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근거 마련

자.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및 신속성 강화(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기술분쟁조정의 당사자 간 이견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예 사실조사, 알선, 1인 조정부 구성에 따른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

차.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

(私人)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인정 등(안 제45조 및 제46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산정 기준과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신설

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가해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가해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토록 하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

파.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54조).

하. 부칙의 시행일 및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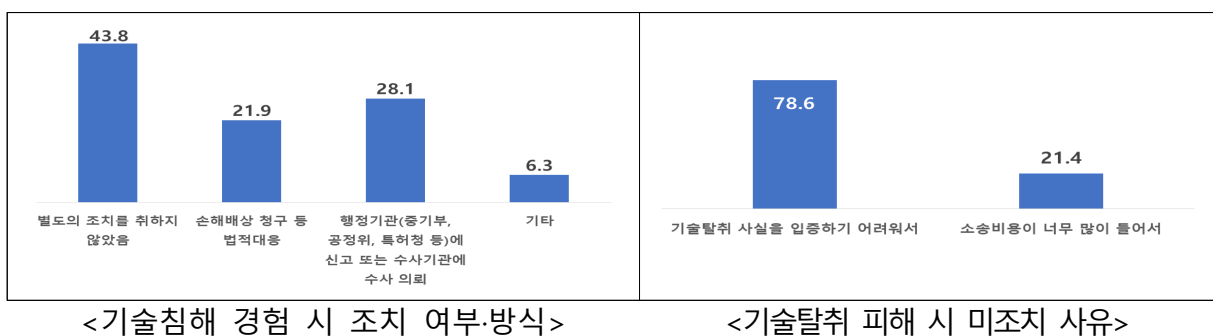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취지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¹⁾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는 한해 299건으로, 평균 손실액은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재판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해 승소율이 낮고²⁾ 소송 기간이 길며³⁾, 승소 시에도 손해액 인정률⁴⁾이 낮아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43.8%('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1) 중소벤처기업부(20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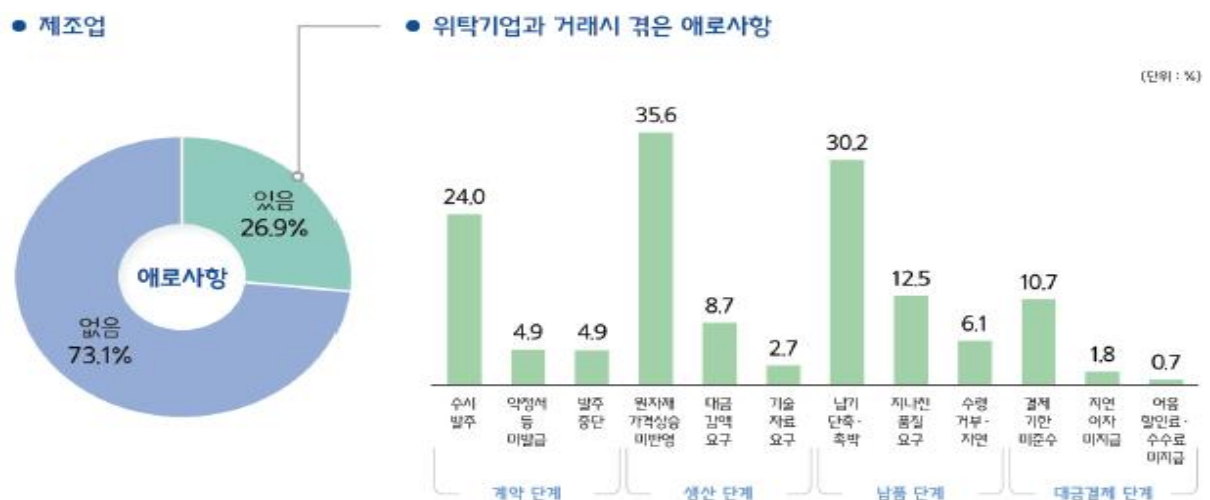
2) 최근 5년간('18~'22) 기술분쟁 사건 승소율(25.6%)은 전체 민사사건 승소율(55.6%)의 약 2분의 1 수준(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3) 판결(1심 기준)까지 1년이상 소요 기간: 민사 94.6%, 형사 77.5%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4) 민사사건 승소사건 중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청구액 대비 17.5%인 1.4억원 수준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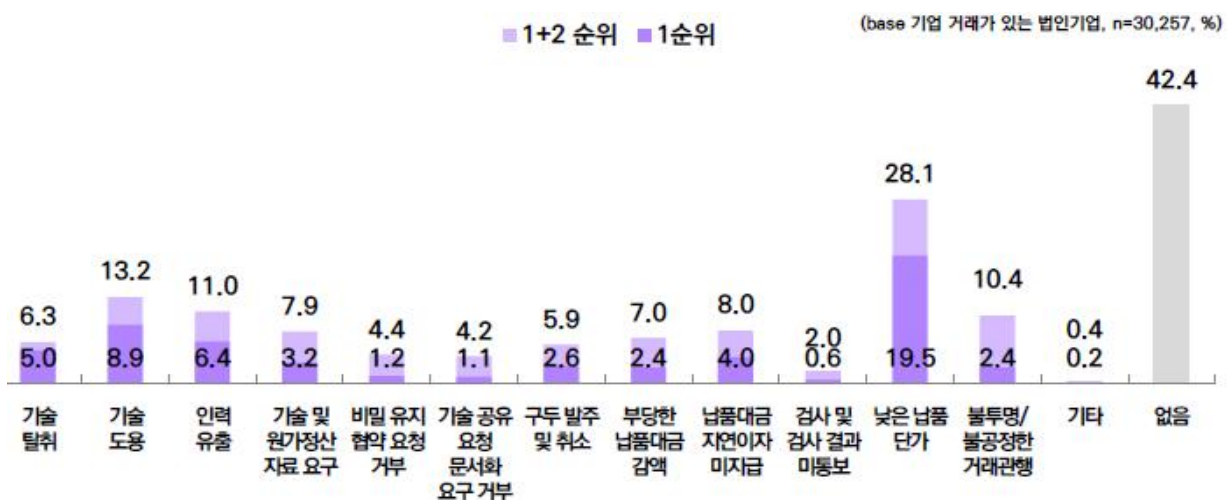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2.7%(벤처기업의 경우 7.9%)가 위탁기업과의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으로 “위탁기업의 기술자료요구”를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은 기업간 거래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1] 위탁기업과 거래시 겪은 애로사항의 비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표 2] 기업간 거래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2년 기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예방적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합의에 기반한 분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보호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NDA⁵⁾) 의무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도입, 침해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확대 등 행정·형사·민사적 제재 강화를 통해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이로써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체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제재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수탁·위탁거래 관계

5) Non-Disclosure Agreement

의 기술자료 침해까지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보호 법령 현황

구 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4년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6년 기술보호 관련 규정 도입)
지 원	국내	국내 소재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 (별도 규정없음)
	해외	해외 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행정조사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시정권고 → 공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공표 → 벌칙)
제 재	민 사	- (별도 규정없음)	❶ 손해배상 제도(징벌적 손해배상) ❷ 손해액 산정기준 ❸ 입증책임 전환제도 ❹ 자료송부 및 ❺ 자료제출명령 제도
	벌 칙	- (별도 규정없음)	❶ 부당한 기술임치(벌금·형벌) ❷ 시정명령 미이행(벌금·형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기술보호 영역

	비거래 관계 [기술보호법]	수위탁거래 관계 [상생협력법]
법적 의무		▶ 비밀유지계약 의무 등 부과 가능
사후 구제	▶ 시정권고만 可 [공백영역]	▶ 시정명령, 민사 등 조치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시, 기술보호 기반조성, 분쟁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8장 56개 조문으로 그 구성을 확대하여 현행 기술보호 지원사업 실시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 도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조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등 행정·형사제재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수단을 강화하고, 법률 제명에서 “지원”을 삭제함으로써 지원법 성격의 현행 법률을 보호법·제재법으로 전환하고 있음.

[표 5] 현행법과 개정안 체계 비교

현행법			개정안		
장	조	조 제목	장	조	조 제목
제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행법			개정안		
장	조	조 제 목	장	조	조 제 목
추진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추진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8의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제9조	의무사항
	제8의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제10조	서면의 발급 등
	제8의4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1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의5	사건기록의 송부 등		제12조	시정조치 등
	제9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13조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제19조	사건기록의 송부 등
	제1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14조	별점 등
	제1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5조	별점 등의 감면
	제13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6조	교육명령 등
	제1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 기관		제17조	과징금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15조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 조성	제18조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16조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기술 임치제도
	제17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제21조	기술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18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2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제19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3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20조	국제협력		제2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21조	기술보호 상생협력		제25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2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2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 기관
				제27조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제29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30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31조	피해입증 지원
				제32조	피해회복 지원
				제33조	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제34조	국제협력
				제3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현행법			개정안		
장	조	조 제 목	장	조	조 제 목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의 설치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36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의 설치
	제24조	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37조	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	알선
	제26조	분쟁의 중재 등		제39조	사실조사
	제27조	자료요청 등		제40조	분쟁의 조정 등
	제28조	조정·중재비용 등		제41조	분쟁의 중재 등
				제42조	자료요청 등
<신설>			제6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43조	조정·중재비용 등
				제44조	금지청구권 등
				제45조	손해배상책임
				제46조	손해액의 인정 등
				제47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6장 보칙	제29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제48조	자료제출명령
	제30조	청문		제49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0조	청문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비밀유지 의무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제8장 벌칙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과태료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①침해 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②계약관계 등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중소기업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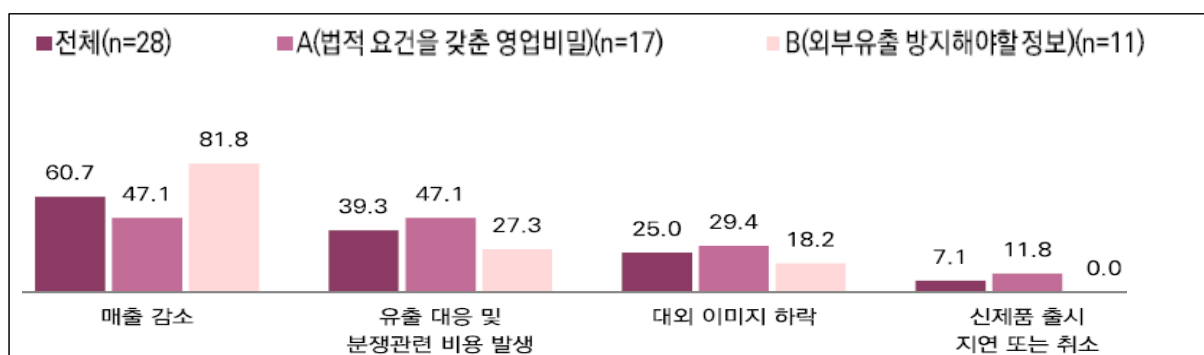
[표 6]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u>중소기업기술</u>”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u>경영상의 정보</u>를 말한다. 3. “<u>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u>”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u>(이하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현행과 같음) 3. “<u>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u>”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취득한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u>중소기업기술</u>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정안 제2조제3호마목의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을 “중소기업기술”로 규정하여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중소기업기술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⁶⁾, 기술자료⁷⁾ 등의 보호대상 요건, 즉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2023년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에서 기술상 또는 경영상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8,123개사 중 경제성·비공지성·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비밀 보유기업(2,733개사)보다 3가지 법적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외부유출 방지가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5,390개사)이 더 많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우의 매출감소 피해가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보다 더 높게 조사된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표 7] 외부 유출로 경험한 피해 종류(2023년 영업비밀보호 실태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요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7) 요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둘째,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외에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안 제9조),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 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서면 체결 등 기술제공요구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10조), 금지행위 및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행정제재(벌점부과·과징금·과태료 등), 형사제재(시정명령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민사구제(금지청구,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등)를 신설하고 있음.

[표 8]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등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금지행위 및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제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	제12조(시정조치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4조(벌점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제17조(과징금) - 제2조제3호 위반시 50억원 이내 과징금 제44조(금지청구권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제45조(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3호 위반시

금지행위 및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제재
·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제46조(손해액의 인정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손해액 인정 가능 기준 명시 제47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제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주장을 부인하는 가해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제9조(의무사항) ①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나.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	제12조(시정조치 등) - 제9조제1항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권고 - 제9조제2항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4조(벌점 등) - 제9조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금지행위 및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제재
하는 행위 2. 제40조제3항의 상대방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제10조(서면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1.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거래교섭 관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대방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조치 등) - 제10조제1항·제2항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4조(벌점 등) - 제10조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제56조(과태료) - 제10조제1항·제2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셋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법에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안 제12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표 9]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현행	개정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u>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u>공표할 수 있다.</u> ④ (생략)	제12조(시정조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법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u>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 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경우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u> 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경우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복행위를 한 경우 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개정
	② (생략)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 또는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 등을 <u>공표할 수 있다.</u> ④ (생략)
<신설>	제5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u>지날 때까지</u>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u>지날 때까지</u>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넷째, 현행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편하여 ①위원수 확대(50명→100명), ②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전문위원 신설, ③분쟁 해결 방식으로 조정·중재 외에 “알선” 도입, ④조정·중재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근거 마련, ⑤소액 사건 등에 대한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도입 등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표 10]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관련 조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범위 확대	○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계약관계 등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중소기업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추가 -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경제적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모두 충족 필요 - 중소기업기술: 경제적유용성만 충족 필요	제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금지행위 및 기술제공요구 관련 기준제시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제2조제3호
	○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금지행위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라 함)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등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행위	제9조
	○ 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화 ○ 비밀유지계약 서면 체결	제10조
금지행위 및 기술제공요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 위반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 이 법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2조
	○ 벌점부과 등 -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제14조
	○ 과징금 - 제2조제3호 위반시 50억원 이내 과징금	제17조
	○ 금지청구권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제44조

구분	내용	관련 조문
	○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3호 위반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제45조
	○ 손해액의 인정 등 - 제2조제3항 위반시 손해액 인정 가능 기준 명시	제46조
	○ 과태료 -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6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칙 신설	제12조 제54조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 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편	○ 위원수 확대(50명→100명) ○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전문위원 신설 ○ 분쟁 해결 방식으로 조정·중재 외에 “알선” 도입 ○ 조정·중재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소액 사건 등에 대한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도입 등을 규정함	제36조 ~제43조

다. 유사 법률안과의 비교

개정안(이하 “김종민의원안”이라 함)과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⁸⁾(이하 “송재봉의원안”이라 함)이 2025년 12월 23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양 법률안 모두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중소기업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 요구시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조사 시 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등 행정·형사제재 신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수단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밀유지계약 등 체결 대상 기술의 요건 및 대상 거래관계, 행정조사 실시 요건 및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액,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 등의 규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김종민의원안은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에서 중소기업에게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송재봉의원안은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에게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

8)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33호), 2025. 12. 24. 우리 위원회에 회부

성 요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거래교섭 관계 포함 여부, 보호대상 기술의 요건에 비공지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김종민의원안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송재봉의원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등의 피해기업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의 경우 김종민의원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자에게 5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송재봉의원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침해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데 대한 보복행위 등으로 구분하면서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액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표 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김종민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 확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 기술의 요건 중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요건 <u>완화</u>	좌동

구분	김종민의원안	송재봉의원안
기술요구시 서면발급, 비밀유지계 약 체결 의무	-대상관계: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 술거래관계, <u>거래교섭 관계</u> -대상기술: <u>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u> (경제 성, 비밀관리성)	-대상관계: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 술거래관계 -대상기술: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 (경제성, 비 밀관리성, 비공지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행정조사	-실시요건: 신고 또는 <u>직권</u> -신고자 범위: 피해기업 및 <u>제3자</u> -행정조사 대상: <u>이 법 위반행위</u>	-실시요건: 신고 -신고자 범위: 피해기업 -행정조사 대상: <u>제9조 및 제10조 위반행위</u>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기 술 요구행위 등,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체 결의무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대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과징금: <u>50억원 이내</u>	-부과대상: ①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② <u>보복행위</u> -과징금: ① <u>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매출액의 6% 이내</u>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 또는 이익 액의 5배 이내 ② <u>보복행위: 위탁거래대금의 2배 이내 또는 매 출액의 6% 이내(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 또는 이익액의 5배 이내</u>
금지청구	-대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청구조치: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그 밖에 <u>제12조(시정조치 등)를 위반하는 행위의 금 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u>	-대상: <u>좌동</u> -청구조치: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그 밖에 <u>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u>
손해배상	-요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기업 이 있는 경우 가해기업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 -5배 손해배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요건: <u>좌동</u> -5배 손해배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u>서면 발급의무 및 비밀유지계약위반의 경우</u>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가해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 하여야 함	미규정
벌칙	-시정명령 중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비밀유 지계약체결 의무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중 서면제공의무, 보복행위금지 불 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 법률안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개정안과 현행 기술보호법제 비교

개정안과 유사하게 기업 등의 기술보호 및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등을 규정한 현행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특허법」 등이 있음.

「특허법」에 따른 특허는 등록⁹⁾을 요건으로 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¹⁰⁾은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

9)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 카. (생략)

런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된 기술임을 고려할 때 특허와 산업기술은 법률에 따라 개념이 명확하게 특정되고 공식적으로 등록·공지된 것이므로 개정안의 중소기업기술과 법률 적용상 혼란 등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보임.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사용을 규율하기 위해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를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역시 하도급관계 및 수탁·위탁관계에서의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행정제재(행정조사, 과태료, 과징금), 민사구제(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각 법률의 보호대상 기술 범위에 따라 개정안이 신규 도입하려는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형사제재, 민사구제와 법률 적용상 중복 등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법률간 적용 우선순위와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간의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1] 주요 개정사항별 현행 기술보호법제 관련 제도 비교

구분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소관부처	중기부	지재처	중기부	공정위
구제대상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자료	기술자료
기술보호 대상요건	경제적유용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구분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비공지성		
조사권한 및 방법	신고→ 행정조사	신고→ 수사(특사경)	신고→ 행정조사	신고→ 행정조사
침해행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중소기업기술 제공요구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정적 제재	• 행정조사 대상 • 시정권고·명령 • 공표 • 조사불응 시 과태료 • 비밀유지계약 위반 시 과태료 • 벌점부과 및 제재 • 과징금	X	• 행정조사 대상 • 시정권고·명령 • 공표 • 공정위 조치요구 • 조사불응 시 과태료 • 비밀유지계약 위반 시 과태료 • 벌점부과 및 제재	• 행정조사 대상 • 시정명령 • 공표 • 조사불응 시 과태료 • 전속고발 • 벌점부과 및 제재 • 과징금
민사적 구제	• 손해배상(최대 5배) •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
형사적 제재	• 시정명령 불응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	• 침해행위 시 15억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	• 시정명령 불응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시정명령 불응 시 1.5억원 이하 벌금 • 침해행위 시 하도급 금액의 최대 2배 벌금

마. 관계 부처 의견

(1) 지식재산처 의견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먼저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¹¹⁾ 개정안은 ①타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중 비공지성·비밀관리성 요건을 무력화하므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WTO TRIPs,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협정)¹²⁾에 위배될

1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협정(WTO TRIPs)

영문	국문
SECTION 7: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i>Article 39</i> 2. Natural and legal persons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information lawfully within their control from being disclosed to, acquired by, or used by others without their consent in a manner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so long as such information: (a)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c)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2.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u>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것</u> 나. 비밀이기 때문에 <u>상업적 가치</u>를 갖는 것, 그리고 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u>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u>

우려가 있고, ②특허권·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도 보호하게 되어 기업에게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인 기술개발 유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③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중소기업 등 특정 계층이 보유한 기술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한 사례는 없고, ④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은 일반 기술을 모두 보호하고자 하면, 보호대상의 범위가 모호하여 거래 상대방의 기술침해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과의 거래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행정제재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태양을 “부정, 부당”만으로 규정하고 있어¹³⁾ 「부정경쟁방지법」의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¹⁴⁾에 비해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과징금·시정명령의 기준으로는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영문	국문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것

자료: 지식재산처

13)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민사구제 신설과 관련하여서도 ①개정안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규정의 중복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②개정안의 민사규정은 입증책임 전환 등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연구소·대기업에 차별이 발생하며, ③양 법률에서 민사규정을 중복 규정할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로 중복청구, 중복배상, 판단모순 발생 우려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안 제2조제3호) 및 부당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행위 등(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하도급법」상 규율대상인 기술자료 사용·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중복규제 및 사업자 부담이 우려되고, 행정조사 및 처분 관련 정부기관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하도급법」을 우선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현재 「상생협력법」에서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¹⁵⁾과 동일하게 「하도급법」·「공

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를 제한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중소벤처기업부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와 탈취 예방, 피해구제 목적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상생협력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교육명령, 벌점 등 행정제재 강화 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

개정안은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 중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확충”을 “중소기업기술 침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형태에서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행위로부터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호법·제재법 형태의 법률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음.

1) 제명 및 목적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기술 <u>보호 지원에</u>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u>보호에</u>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u>보호를 지원하기 위한</u>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침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u> ----- ----- ----- ----- -----.

이는 개정안이 단순히 기술보호를 돕는 “지원법”의 한계를 넘어, 비

밀유지계약(NDA) 의무화,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강제력을 동반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중소기업을 두텁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법률(진흥법의 성격)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규제법의 성격)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 외에 중소기업만을 위한 차별화된 기술 “보호”법을 제정한 해외 입법 사례가 없고, 기술유출 사건은 “가해 행위의 불법성”이 본질인데 “중소기업”만을 특별히 보호할 경우 동일 행위에 대해 행위주체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형평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보호수단의 강화, 행정처분 등 체계구축의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 성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정의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위탁거래 관계”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5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6. “거래교섭 관계”란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거래를 위하여 교섭 또는 협상하는 관계를 말한다.

7. “수탁기업”이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8. “위탁기업”이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9.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신 설>	<u>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u> 11. “<u>공공기관</u>”이란 「<u>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 설>	12. “<u>혁신형 중소기업</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가.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u>」에 따라 지원을 받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u>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u>」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라. 「<u>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u>」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을 본법에 규정하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대상을 “거래교섭 관계”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고자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①“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안 제2조제3호라목)”와 ②“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안 제2조제3호마목)”를 추가하고 있음.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 ”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 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 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u><신설></u>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라. 취득한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 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u>중소기업기술</u> 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구분	현행	개정안
		<u>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u>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u> (경제적 유용성)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u> (비공지성) <u>비밀로 관리되는</u> (비밀관리성) 중소기업기술(경제적 유용성)	

현행법 상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안 제2조제3호가목~다목)와 개정안에서 추가된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안 제2조제3호라목)”의 경우 보호하려는 대상이 경제적 유용성·비공지성·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인 반면 개정안에서 추가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안 제2조제3호마목)”의 경우 단지 계약관계 등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로만 한정하고 보호대상을 “중소기업기술”(경제적 유용성만 충족 필요)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기술보호 관련 법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밀관리성 및 비공지성을 요건에서 배제하고 있음.

이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비밀정보 표시, 접근 통제 및 대상자 제한 등 엄격한 비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입법적으로 배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됨¹⁶⁾. 다만, 현행 지

식재산 보호 법제 및 국제규범(WTO TRIPs 등)이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영업비밀 보호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국내외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현장의 혼란, 위법행위에 대한 남소(濫訴) 위험이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약관계에 근거한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만족하는 기술의 보호는 타당하고,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편, 안 제2조제3호마목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로 “계약 관계 등”에 따른 기술침해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

16)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법률 개정을 통해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려 한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리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24.8.29. 선고 2023나2054809, 출처: 영업비밀 보호센터)

요가 있어 보임.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안 제9조제1항¹⁷⁾에서 명시한 수탁·위탁거래 및 기술거래 관계상의 계약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보호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는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법률 적용의 선후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기술보호와 관련된 과징금, 시정명령, 금지청구, 손

17) 안 제9조(의무사항) ①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 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있는데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현행 기술보호법제에 유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설규정이 포함된 개정안에 따라 경우 기술침해 보호대상이 중복되어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와 같이 법률 적용의 선후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만으로 법적 명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타 법률과의 중복규제나 부처간 기술침해에 대한 조사 경합이 예상되는 개별 해당 조문별로 우선 적용 관계를 명시함으로써¹⁸⁾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본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일부 조항을 본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상생협력법」에도 관련 조항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양 법률간 선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의 예시에 「상생협력법」을 추가하거나, 부칙에서 「상생협력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예를 들어 현행 「상생협력법」 제27조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법률간 적용 관계를 명시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개정안 제3장은 현행법 제3장에 혼재되어 있던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는 중소기업기술 제공요구 금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침해 예방부터 행정적 제재에 이르는 일련의 기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1) 의무사항

현행	개정안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u><신설></u>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제9조(의무사항) ①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나.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0조제3항의 상대방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	---

안 제9조는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제공 요구 행위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안 제12조), 벌점부과(안 제14조),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안 제54조)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표 12] 중소기업기술 침해등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
제9조(의무사항) ①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2조(시정조치 등) - 제9조제1항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권고 - 제9조제2항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4조(벌점 등) - 제9조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
②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나.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0조제3항의 상대방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7%(벤처기업의 경우 7.9%)가 위탁기업과의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으로 “위탁기업의 기술자료요구”를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은 기업간 거래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¹⁹⁾,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탁·위탁 거래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및 거래교섭 관계를 본법의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9) '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수탁기업(중소기업)의 2.7%(약 2,263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거래 시 ‘위탁기업의 기술자료요구’를 애로사항으로 응답 (모집단: 83,836개사)

- 기업간 거래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기술자료 요청을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9%인 약 2,390개사 수준 (모집단: 30,257개사)

[표 13]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입법례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9조(의무사항) ① <u>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또는 거래 교섭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u> 2. 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u>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기회(契約機會)의 제한·박탈 또는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보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告知)한 행위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나.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0조제3항의 상대방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u>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u>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u> 1. <u>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u> 2. <u>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u> 3. <u>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u>	제25조(준수사항) ① <u>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2. <u>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u> 13. <u>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u> 13의2. <u>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u>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u>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참고로, 개정안은 동 조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제공 요구 행위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시정명령(안 제12조), 벌점부과(안 제14조), 과징금 부과(안 제17조), 손해배상책임(안 제45조) 등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면서 제재의 구성요건으로 “제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등 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2조제3호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정의를 규정하였을 뿐 그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할 동 조문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4] 개정안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정의) 위반시 제재 조항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12조(시정조치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4조(벌점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제17조(과징금) - 제2조제3호 위반시 50억원 이내 과징금 제44조(금지청구권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금지행위	위반시 제재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5조(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3호 위반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제46조(손해액의 인정 등) - 제2조제3호 위반시 손해액 인정 가능 기준 명시 제47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제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주장을 부인하는 가해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안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기술은 경제적 유용성만 만족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의지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미 공지되거나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은 기술에 대해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거래상대방은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향후 중소기업과의 협업·공동개발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의무사항에 개정안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수탁·위탁 관계에서의 행위까지 포함한 안 제9조제1항은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상생협력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2) 서면의 발급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서면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술(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1.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거래교섭 관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대방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안 제10조는 수탁·위탁 거래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에서 수탁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 기술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안 제9조의 의무사항 규정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시정명령(안 제12조), 벌점부과(안 제14조), 과태료(안 제56조) 등 제재의 대상이 됨.

[표 15]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제재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제재
제10조(서면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등) - 제10조제1항·제2항 위반시 행정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1개월내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 제14조(벌점 등) - 제10조 위반시 벌점부과 이후 교육명령 등의 조치

기술제공요구기준	위반시 제재
1.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거래교섭 관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대방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 제10조제1항·제2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안은 자료제공요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적용 대상을 현행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 관계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²⁰⁾

20)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5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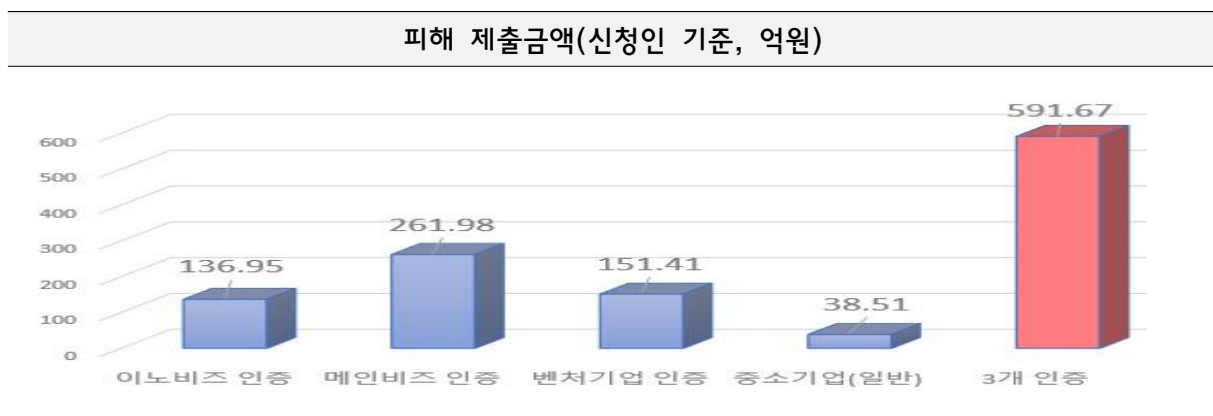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및 거래교섭 관계²¹⁾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²²⁾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

이는 2018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인증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23.2%에 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피해 주장금액(591억원 수준)이 일반 중소기업의 피해 주장금액(38억원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업을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표 16] ‘혁신형 vs 일반 중소기업’ 기술분쟁 피해규모



주: 기술분쟁조정 신청인의 피해 주장금액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것을 말한다.

2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래교섭 관계”란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거래를 위하여 교섭 또는 협상하는 관계를 말한다.

2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개정안 제9조와 제10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제9조에서 부당한 중소기업기술 제공 요구행위를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 제10조의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특히, 기술침해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기술을 대상으로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의 실효성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17] 부당한 기술제공요구 금지 및 서면요구·비밀유지계약 대상 비교

구분	정당한 사유 없는 중소기업기술 제공 요구 금지 (안 제9조제1항제1호)	기술제공요구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안 제10조)
거래 관계	수탁·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	
보호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수탁·위탁관계)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및 거래교섭 관계)
보호 기술	중소기업기술 (경제적유용성 요건)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제공의무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표 18] 기술제공요구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입법례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기술제공 요구 서면 발급 의무	제10조(서면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술(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 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 다. 1.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에게 기술의 제공을 요 구하는 경우 2.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 계에서 대기업·중견기 업·공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술의 제 공을 요구하는 경우 3. 거래교섭 관계에서 대 기업·중견기업·공공기 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게 기술의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② 원사업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 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 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해당 규정 없음)
비밀유지 계약 서면 체결 의무	제10조(서면의 발급 등)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에 따 라 중소기업이 상대방에 게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기술자료 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 약”이라 한다)을 중소기 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 야 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수급사 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 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 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 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 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업이 위탁 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 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 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 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1. 해당 기술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된 <u>비밀유지계약을</u> <u>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u> 한다.	<u>서면으로 체결하여야</u>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계약 의무에 대해 수탁·위탁 관계에서의 행위까지 포함한 안 제10조제2항은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상생협력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지식재산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비밀”도 아닌 이미 공지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두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수·위탁 관계와 같은 우월적 지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까지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과의 거래·협업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거래교섭·기술거래 등의 단계에서 기술제공 요구에 대한 서면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밀유지

계약의 체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3) 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명령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자</u> 는 ----- -----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 ----- ----- <u>제36조</u> -----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	④ ----- --- <u>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행위 사실을</u> -----

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료,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정조치 등) ① -----

-----제11조-----
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
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
해행위를 한 경우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
을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
해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복행위를 한 경우

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② ----- 제11조
-----중소기업이 제36조 -----

-----시정의 권고나 명령을 -----.

③ -----피신고인이
-----시정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그 권고 또는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 -----.

④ -----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

제13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
----- 제1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

② ----- 제1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신 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

제19조(사건기록의 송부 등) -----
제11조----- 위반
행위 사건과 ----- 제44조에 따라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
-----.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부장관의 행정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서 “이 법 위반행위”로 확대하고, 행정조사의 개시요건으로 현행 “피해기업의 신고” 외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도 가능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현행 “시정권고 및 공표”에 그쳤던 것을 “시정명령”을 추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 19] 행정조사 대상, 개시요건 및 조치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개시요건	신고	신고 또는 직권
신고자 범위	피해기업	피해기업 및 제3자
조사 결과 조치사항	- 시정권고 - 권고 미이행시 공표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 권고 또는 명령 미이행시 공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없음	-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불이행시 ① 시정명령 중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 관련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시정명령 중 서면제공의무, 보복행위금지 관련 명령 불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조치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있는데, 양 법률 모두 시정명령 조항과 불이행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벌칙의 수위로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상생협력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상생협력법」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0] 행정조사에 따른 시정권고·명령 입법례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시 정 권 고 대상	<시정권고>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의 반환·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상, 계약 등의 종료 이후에도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2조의3 및 제18조 위반행위²³⁾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 -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개선요구> 제21조의2 및 제25조 위반행위²⁴⁾ - 비밀유지계약 체결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시 정 명 령 대상	<시정명령> 제2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 보복행위 - 서면발급 의무 위반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시정명령> 제25조 위반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구분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불 이행 시 처벌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시정 명령 불이행시 ① 시정명령 중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비밀유지계 약체결 의무 관련 명령 불 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시정명령 중 서면제공 의무, 보복행위금지 관련 명령 불이행시 5천만원 이 하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 액 이하의 벌금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시정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요구 미이행에 대 한 처벌규정은 없음)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현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범위가 중첩되므로, 해당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조사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의 행정조사 등 행정제재 강화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유출은 적발이 어렵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로 수사를 통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제재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시정권고 등 대상 행위 중 기술자료 관련 조문 발췌

24) 시정권고 등 대상 행위 중 기술자료 관련 조문 발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부당제공 요구행위 등에 「하도급법」상 규율대상인 기술자료 사용·제공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중복규제 및 사업자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미발급,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에 대한 행정조사 적용은 과도한 행정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조사 대상을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중복규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의 우선적용 조항을 추가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수탁·위탁관계에서의 기술사용·제공 금지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법에 규정하게 되므로, 법률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상생협력법」의 관련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벌점의 부과 및 교육명령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벌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3호 또는 제9조, 제10조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벌점 등의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 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조제3호 또는 제9조, 제10조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벌점기준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및 조치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있음. 벌점기준 초과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협력법」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표 21] 벌점부과 및 교육명령 등 입법례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14조(벌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제3호 또는 제9조, 제10조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u>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u>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벌점을 부과</u> 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u>입찰참가자격의 제한</u>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u>영업정지</u> , 그 밖에 <u>하도급거래의</u>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u>벌점을 부과</u>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u>입찰참가자격 제한</u> 을 해당
제16조(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벌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 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u> 에 대한 <u>교육명령 등의 조치</u>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기업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u>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u>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별점기준에 따라 개선요구등과 함께 소속 임직원</u> 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안 제14조에 따라 별점이 부과될 경우 안 제16조에 따라 개선요구 및 임직원 교육명령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라는 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비교적 제재가 경미한 개정안의 별점기준 초과자에 대한 교육명령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개정안에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별점부과 및 조치가 본법에 규정될 경우 법률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상생협력법」의 관련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과징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과징금)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안 제2조제3호) 위반에 대해 50억원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안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안 제2조제3호) 위반에 대해 5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자료 부당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시 서면 미발급,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보복조치 금지 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여 개정안에 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음.

[표 22] 기술침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입법례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제17조(과징금)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

개정안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위반행위는 비공지성·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된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포괄적이고,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 태양을 “부정, 부당”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²⁵⁾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부적합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하도급법」상 규율대상인 기술자료 사용·제공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중복규제 및 사업자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라고 구체화된 반면,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 부당하게’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과징금 부과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간 우선적용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아이디어 침해행위”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등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관 법령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도입하고 있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벌점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제재와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제재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하도급법」에 유사한 제재조항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개정안의 중소기업기술의 요건은 각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의 요건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 법 위반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법률 중복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4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을 적용하도록 법률 적용의 선후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법률 적용의 선후관계 및 타법률 소관 기관으로의 이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만으로 법적 명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을 신규로 도입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동 조문을 통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타법 소관 위반행위와 중복될 경우 타부처에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경우 동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재조치 및 법률간 적용 선후관계 등에 대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법률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 조성

개정안 제4장은 현행법 제3장의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제4장의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술 임치제도, 피해 입증 지원, 피해회복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등을 신설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1) 기술 임치제도

현행	개정안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신설>	제4장(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반 조성) 제20조(기술 임치제도) ① 중소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보유한 기술의 임치(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을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

	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기술임치 등록사항 및 수치인의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수탁·위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⁶⁾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개발 사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기술 비공개를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본법에도 규정하면서, 적용대상을 수탁·위탁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있음.

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4] 기술자료 임치제도 입법례

개정안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20조(기술 임치제도) ① 중소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보유한 기술의 임치[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을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기술임치 등록사항 및 수치인의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 임치제도가 「상생협력법」(수탁·위탁 관계²⁷⁾)과 본 개정안(중소기업 일반)에 각각 근거를 두게 됨에 따라, 제도 간의 법률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해 보임. 양 법률의 입법목적과 대상의 차이를 명확히 하되,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임치 등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 임치제도와 관련하여 「상생협력법」은 임치기업의 동의·파산·해산 등 임치기술의 제공 요건과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등 임치등록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밖에 임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임치기술의 제공요건 및 임치등록사항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임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임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피해 입증 지원 및 피해회복 지원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1조(피해입증 지원) ① 정부는 법 위반행위로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사업 2. 중소기업이 보유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복원·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입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피해회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피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손해액 산정 업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에서 정부가 디지털포렌식과 전문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비용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안 제24조²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표 2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6 예산액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	기술보호 정책연구 및 조사	367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600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889
	통합상담·신고센터	19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944
	기술침해사건 해결 지원	500
	기술지킴서비스	2,207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1,390
	디지털포렌식 지원	100
	기술보호 전담기관 운영	650
	소 계(a)	7,838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4,200
	손해액 산정 지원	1,250
	기술보호 정책보험	160
	소 계(b)	5,610
합 계(a+b)		13,448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28) 안 제2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3.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 조문에서는 전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담기관에 피해회복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담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근거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기반조성과 신속한 피해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감면 등 지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조성과 신속한 피해회복 등을 위해 자부담 감면 등 지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인증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2%로 높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피해 주장금액(591억원 수준)도 일반 중소기업의 피해 주장금액(38억원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업을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²⁹⁾.

다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 특례를 부여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부담 감면 등 지원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기업이 스스로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관리 책임을 다하려는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에 대한 사항을 법 문언상 지원내용과 기준이 특정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지원 특례의 대상 사업이나 상세한 지원내용 등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특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 제4장(안 제18조~제33조)에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기업의 자부담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부담 감면’의 문구를 의미가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분쟁 조정 및 중재

개정안 제5장은 현행법 제5장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

29) 본 조항 외에 개정안(제10조)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및 거래교섭 관계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중소기업기술의 제공을 요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에 기술제공요구 서면발급 의무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중재 외에 알선을 새로이 도입하고, 소액 사건 등에 대한 1인 조정부 및 직권 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행	개정안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u>중소기업기술의</u>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u>중소기업기술(비공지성을 요하지 아니한다)의</u> -----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분쟁의 <u>조정·중재</u> 에 관한 사항	1. --- <u>알선·조정·중재</u> -----
<u><신설></u>	2. <u>다른 법률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u>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u>100명</u>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⑧ <u>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전달기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u>

<신설>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 ⑧ (생략)

<신설>

<신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⑪ ----- 제10항-----

-----.

제37조(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제36조제10항의 전문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알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사실조사)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하여 사실조사가 필요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④ (생략)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은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분쟁의 조정 등) ① -----

----- 제36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
-----.

②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 결정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2. 제38조에 따른 알선 절차 중에 조정신청이 된 사건

3. 제39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4. 사법기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건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42조제2항으로 이동>

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① ~ ⑨ (생략)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2.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1조(분쟁의 중재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⑪ (생략)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에서 이동> ② (생략)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중재비용 등) ① ~ ②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중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42조(자료요청 등) ① ----- ----- 필요한 ----- ----- -----. ----- ----- ----- -----. ② 조 정부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제3항----- ----- ----- ----- -----. 제43조(조정·중재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①규모를 확대(위원 50인→100인)하고, ②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중재 외에 “알선”을 도입하며, ③사무국·전문위원 등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④소액사

건 등에 1인조정 및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개편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26] 위원회 개편 주요내용

구분	개편내용
규모	위원 50인 → 100인
기능	조정·중재 → 알선·조정·중재
심의·의결사항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추가
지원조직	사무국(전담기관에 설치), 전문위원
조사권한	전문위원의 사실조사 신설
신속조정	소액사건 등 1인 조정 및 직권조정 도입

위원회의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실체파악과 신속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전문위원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³⁰⁾ 규정 및 유사 위원회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사무국·전문위원 설치 등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7] 유사 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중기부	지식재산처	공정위	산업부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	하도급법	산업기술보호법
제도명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	산업기술분쟁조정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 등 50명 ※ 사건별 3명 이내 조정부 구성 (중재부는 최대 5명)	변호사, 변리사 등 80명	9명	변호사, 변리사 등 13명
상임위원	-	-	1명(위원장)	-
운영 사무국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조정대상	중소기업 기술	산업재산권, 영업비 밀, 직무발명	대금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등	산업기술
신청주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인, 영업비밀보유자 등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안 제38조 및 제40조를 통해 알선제도, 1인조정 및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알선제도는 조정·중재 전(前)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위원회가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교섭하는 비교적 제3자 개입 정도가 낮은 분쟁 해결 제도임. 현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³¹⁾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

3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알선

해 분쟁해결의 신속성·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통상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①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 ② 알선 절차 중 조정신청이 된 사건, ③사실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④사법기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①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②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③분쟁조정 예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합의의사가 명백하거나 소액의 분쟁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 뿐 아니라 일방의 조정거부로 인한 협상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보이며,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부과함으로써(안 제40조제6항)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해대립이 첨예한 기술침해 분야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사의 충실성이 저해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15년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 256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58건에 그치고 조정안이 제시되지 못한 총 127건의 사건 중 90.6%에 이르는 115건의 사건이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 제시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후 그간의 조정 중단 및 불성립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정성립률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함께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28] 2015년 이후 위원회 조정 현황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 취하	조정중단 ¹⁾	각하 ²⁾	계
15년	22	-	3	4	7	1	14	-	15
16년	17	-	6	8	14	2	1	-	3

구분	접수	진행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 취하	조정중단 ¹⁾	각하 ²⁾	계
17년	19	-	2	7	9	3	7	-	10
18년	19	-	3	9	12	-	7	-	7
19년	21	-	2	7	9	1	11	-	12
20년	30	-	6	5	11	-	19	-	19
21년	25	-	10	5	15	-	10	-	10
22년	24	-	9	1	10	1	13	-	14
23년	33	-	12	7	19	1	13	-	14
24년	20	-	4	3	7	-	13	-	13
25.9월	26	13	1	2	3	-	7	3	10
계	256	13	58	58	116	9	115	3	127
비율(%)	-	-	50.0%	50.0%	100.0%	7.1%	90.6%	2.4%	100.0%

주 1) 조정중단: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2) 각하 :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조기 종결 지원을 위해 기술 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1인 조정부, 직권조정 등의 도입을 통해 소액 사건 등의 신속한 해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참고로 위원회의 규모 및 기능 강화, 위원회의 조정·중재 심의와 행정 조사와의 연계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²⁾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향후 개정안과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21호)

마.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

개정안은 제6장을 신설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손해액의 인정, 자료제출명령 등 민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금지청구권 등

개 정 안
제6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44조(금지청구권 등) ①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조제3호를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있음. 금지청구권은 한번 유출되면 그 가치를 회복하기 어려운 기술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적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고 매번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침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는 「부정 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이 있음.

[표 29] 기술 침해행위 등 금지청구권 입법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44조(금지청구권 등) ①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조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3. 그 밖에 제12조의3 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의 금지청구권 신설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중 개정안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과 중첩되어 법 체계 정합성을 위반하고,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개정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한편, 제2조제3호마목은 보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정안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 지원법 형태를 탈피하면서, 두터운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사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첩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개정안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2) 손해배상책임

개 정 안
제45조(손해배상책임)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기업”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힌 자(이하 “가해기업”이라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해기업이 제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기업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가해기업의 재산상태
7. 가해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8. 가해기업의 우월적 지위 여부
9.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개정안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해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징벌적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때 ①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기

업이 입은 피해규모, ③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⑤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 ⑥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⑦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⑧가해기업의 재산상태, ⑨가해기업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⑩가해기업의 우월적 지위 여부, ⑪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이 있고, 각 법률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손해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음.

[표 30] 손해배상책임 입법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45조(손해배상책임)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기업”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손해를 입힌 자(이하 “가해기업”이라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해기업이 제2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5조제1항제14호차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5배 이내

개정안의 손해배상책임 신설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중 개정안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중첩되어 법체계 정합성을 위반하고, 제2조제3호마목은 보호대상이 과도하게 넓어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정안에 부동의하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 지원법 형태를 탈피하면서, 두터운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사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첩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개정안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안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3) 손해액의 인정 등

개 정 안
제46조(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2조제3호를 위반하여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품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피해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 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피해기업의 중소기업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기업의 손해액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품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가해기업이 양도한 물품 수량 중 피해기업의 생산능력 범위 내 수량에 대해 “단위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과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즉, 판매이익·생산능력 초과수량은 실시료로 계산), ②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③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침해자 이익) 중 어느 하나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인정 규정을 두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에서도 손해액 인정시 기준으로 개정안과 같이 판매이익·실시료·침해자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손해액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1] 손해액 인정 관련 입법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46조(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2조제3호를 위반하여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해기업이 그 중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피해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피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 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 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중소기업기술의 사	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등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	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 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가해기업이 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피해기업의 중소기업기술 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그 이익액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안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합산하게 된다면 가해기업의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뿐 아니라 통상 보상의 범위가 매출손실과 이익에 집중됐던 것에 추가하여 매출 발생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막대한 매몰비용을 보상받게 됨으로써 기술 혁신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혁신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실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술개발 투입 비용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비용 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기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산입방식이므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실한 배상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타 지식재산법제상의 손해액 산정 방식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함께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손해액 인정 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기본적으로 개정안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와 중첩되고 보호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액 인정규정인 안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46조제3항에서 인용하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서 이 법의 위반 중 제2조제3호 위반은 제외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 지원법 형태를 탈피하면서, 두터운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사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첩에 대해 개정안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4)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개 정 안
제47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가해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가해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침해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기술침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가해기업에게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현재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법률이 최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행위태양”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한 것을 참고하여, 개정안의 용어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3]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입법례

개정안	특허법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47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① 제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가해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가해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할 수

개정안	특허법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가해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침해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용·방식·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자료제출명령

개 정 안
제48조(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제출명령 불복종시 진실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규정한 유사 입법례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이 있음.

[표 32] 자료제출명령 관련 입법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48조(자료 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5조에 따른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u>영업비밀 침해</u>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u>영업비밀 침해</u>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	제40조의5(자료 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4조의7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	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입법례 중 「부정경쟁방지법」 및 「하도급법」은 영업비밀 침해 등

으로 인한 소송 중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는 영업비밀의 2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 등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생협력법」도 법 개정³³⁾을 통해 비밀유지명령이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 역시 기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의 기밀노출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소기업이 정보 유출 우려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전부개정법률안의 기본적 취지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 체계를 정립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최근 국회에서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를 위해 의결된 개정 「상생협력법」³⁴⁾에 따라 시행 예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당사자에 의한 신문,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본법에도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자료제출명령 신설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는 기본적으로 개

33) 2028.2.20. 시행 예정(2026.2.19. 공포)

34) 2028.2.20. 시행 예정(2026.2.19. 공포)

정안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와 중첩되고 보호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 지원법 형태를 탈피하면서, 두터운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사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중첩에 대해 개정안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바. 보칙

현행	개정안
제6장 보칙 <u>제29조</u>(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u>제30조</u>(청문) 중소기업부장관은 <u>제14조제3항</u>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u>제16조제3항</u>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장 보칙 <u>제49조</u>(조세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u>제50조</u>(청문) ----- <u>제26조</u>----- ----- <u>제27조</u> -----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비밀유지 의무) -----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라 기술 임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24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삭제>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4. 제29조----- -----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0조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6조-----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 제51조----- ----- -----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 ----- ----- -----.

개정안은 법률의 실체규정과 관련되는 절차적인 사항과 그 밖의 부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7장에서 보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세에 관한 특례,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비밀유지 의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으로 현행법 규정에 신설 조문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사. 벌칙

현행	개정안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① 타인의 중소기업기술을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하여 제20조에 따른 기술 임치를 등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5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④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1조제4항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개정안 제8장은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과 자료제공요구 서면발급 의무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에서도 기술 침해행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법」은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어 침해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침해행위 그 자체보다는 부당한 기술자료

임치, 업무상 인지하게 된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 행정상·절차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우선하고,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33] 기술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입법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제54조(벌칙) ① 타인의 중소기업기술을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0조에 따른 기술 임치를 등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5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u>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u>제12조의3</u>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19조</u> 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u>제18조</u>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④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1조제4항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하도급관계)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관계)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아.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의 시행일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기관의 설립이나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³⁵⁾.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민사구제 도입 등을 통해 법률의 성격을 지원법에서 보호법·제재법으로 변경하면서

3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21

현행 지식재산법제 소관 부처와의 협의, 제도정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시행일과 벌칙·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외에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이 신규 도입하는 기술자료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손해배상책임의 시행과 관련한 적용례와 현행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위 승계 및 진행 중인 조정·중재 사건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범위에 수탁·위탁 거래 관계를 포함하여 규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중 유사 조문을 본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상생협력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7

IV. 참고자료

1

기업의 내부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보유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2023년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지식재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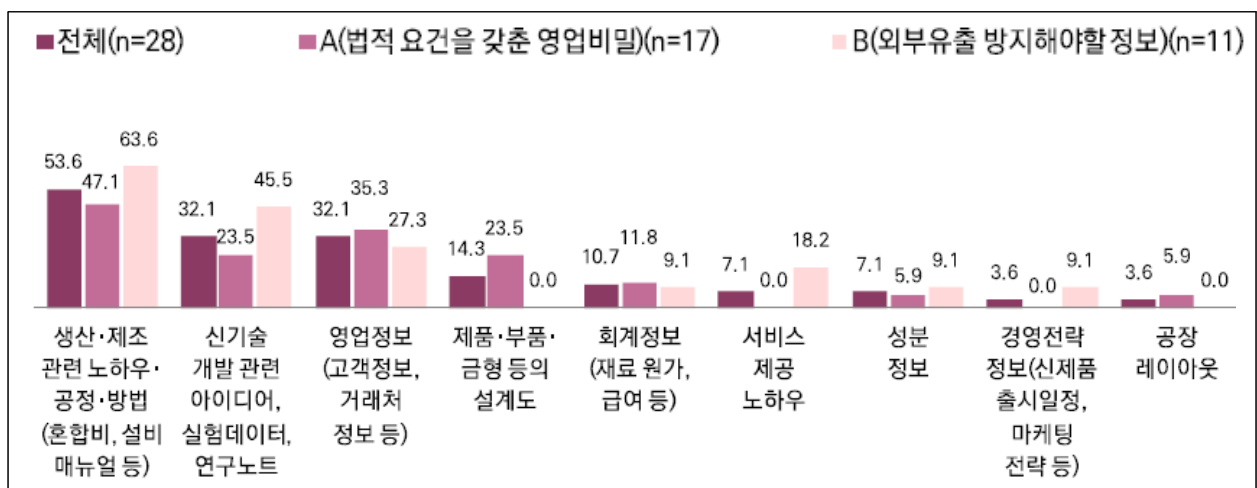
- 조사에 따르면, “기술상 또는 경영상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8,123개사**

*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 : 2,733개사

** 3가지 법적요건은 충족치 못하나 외부유출 방지 필요 정보 보유 기업 : 5,39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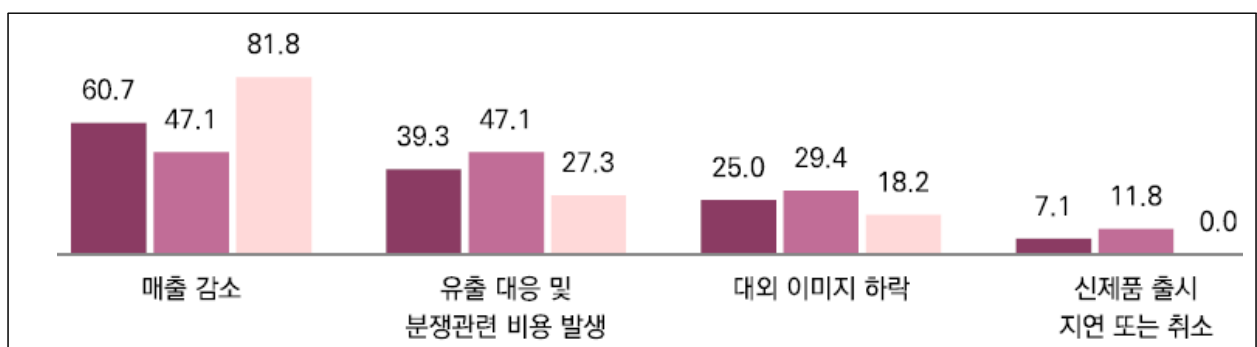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외부 유출 방지해야할 정보’ 중 생산·제조 관련 노하우·공정·방법이 전체의 **63.6%**를 차지

< 외부 유출된 내부 정보의 종류 >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우,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유출보다 **매출감소 피해가 약 1.34배 가량 높음**

< 유출로 경험한 피해 종류, (조사대상 상동)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상생협력법 (위탁기업-수탁기업)	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의	■ (위탁기업) 제조, 판매,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 (위탁대상)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 (수탁기업) 그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원사업자) 원사업자가 ■ (위탁대상)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고 ■ (수급사업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규모 제한	■ 위탁기업의 규모제한 없음 * 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상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일 것 요구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수리위탁(20억원 미만), 건설위탁(30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예시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O) : 중견기업법 §13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O) · 중견기업 → 중견기업 (X) · 중소기업 → 중소기업 (O) * 소기업이 위탁기업일 경우 수탁·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조사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O) · 대기업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2조원 초과 중견기업 → 8백억 ~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하도급법 §13)																					
원사업자와 위탁 대상의 관계	■ 위탁기업과 위탁대상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 (6) X 제조^①,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기술개발 포함)^⑦ (5) = 30가지 * (예시) 제조업자 → 제조위탁 (O) - 용역업자 → 제조위탁 (O) -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O)	■ 원사업자와 위탁대상의 관계가 7가지로 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원사업자</th><th>수급사업자</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조위탁</td><td>제조</td><td>제조</td></tr> <tr> <td>판매</td><td>제조</td></tr> <tr> <td>수리</td><td>제조</td></tr> <tr> <td>건설</td><td>제조</td></tr> <tr> <td>수리위탁</td><td>수리</td><td>수리</td></tr> <tr> <td>건설위탁</td><td>건설</td><td>건설</td></tr> <tr> <td>용역위탁</td><td>용역</td><td>용역</td></tr> </tbody> </table> * (예시) 용역업자 → 제조위탁 (X) - 제조업자 → 공장건설위탁 (X)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제한 사항	■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O)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O)	■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수리, 건설,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할 것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 → 엔진제작 위탁 (O) - 자동차제조업자 → 작업복제조 위탁 (X)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침해 신고규모 (※ 기술침해 행정조사 및 조정신청 기준)

- 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이노·메인·벤처인증) 기업은 총 13건으로 전체 사건의 23.2%에 해당

* '18.12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도입 이후 신청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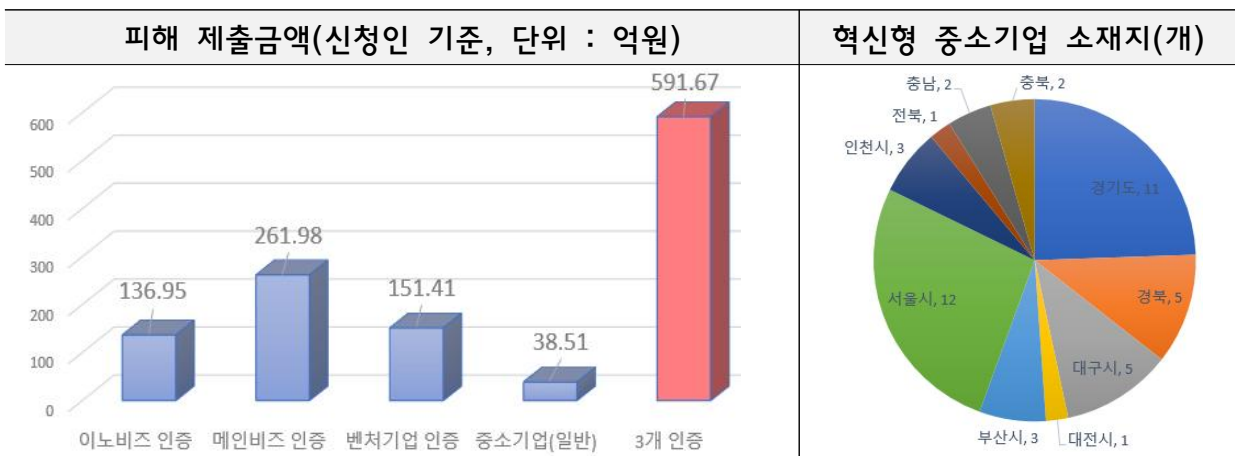
- 분쟁조정제도 도입이후('15.2월), 접수된 165건 중 혁신형(이노·메인·벤처인증) 기업 사건은 총 45건으로 전체 사건의 27.3%에 해당

□ 기술분쟁 피해규모 (※ 기술분쟁조정 신청인의 피해 주장금액 기준)

- 메인비즈 기업의 피해 주장금액은 약 261억으로 높았으며, 혁신인증을 모두 획득한 기업의 피해주장 금액은 약 591억 수준

- 반면, 일반 중소기업은 38억 수준으로 혁신형 기업과 큰 차이

〈 '혁신형 vs 일반 중소기업' 기술분쟁 피해규모 〉



□ 기술분쟁 대응비용 (출처 : '21년 지식재산권분쟁실태조사, 지식재산연구원)

- (대응비용) 침해조사·경고장, 소송대응 등의 소요비용*은 혁신형기업(이노·벤처)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최대 약 1.68배

* 피해기업 평균 대응비용 : 벤처·이노기업(116.9백만), 중소기업(69.7백만)

- (소송비용)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소송비용은 이노·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기업 대비 약 2.41배

* 피해기업 평균 소송비용 : 벤처·이노기업(80.0백만), 중소기업(33.2백만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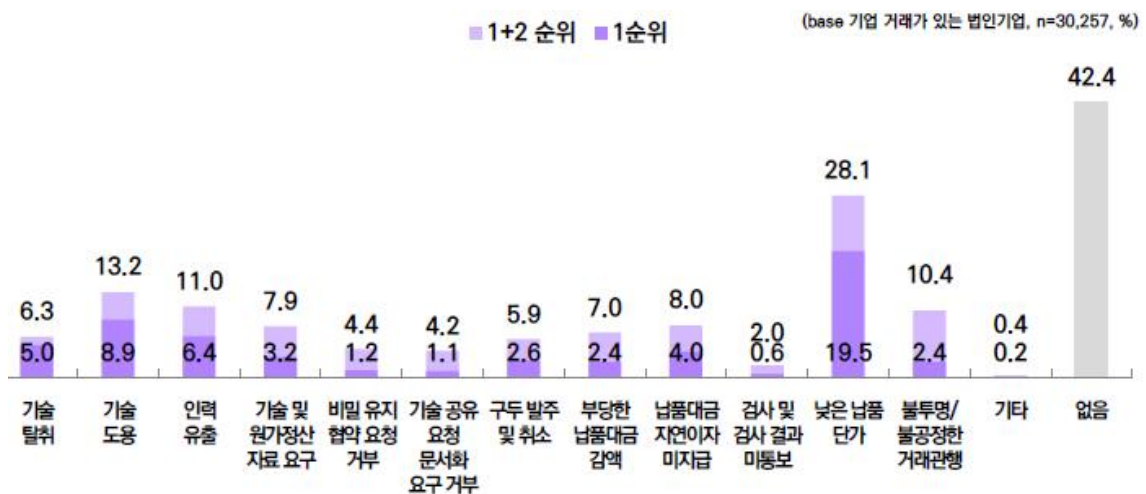
- 수탁기업(중소기업)의 2.7%(약 2,263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거래 시 '위탁기업의 기술자료요구'를 애로사항으로 응답

* 전체 83,836개 조사대상 업체수 기준으로 약 2,263개사가 해당



□ '22년 기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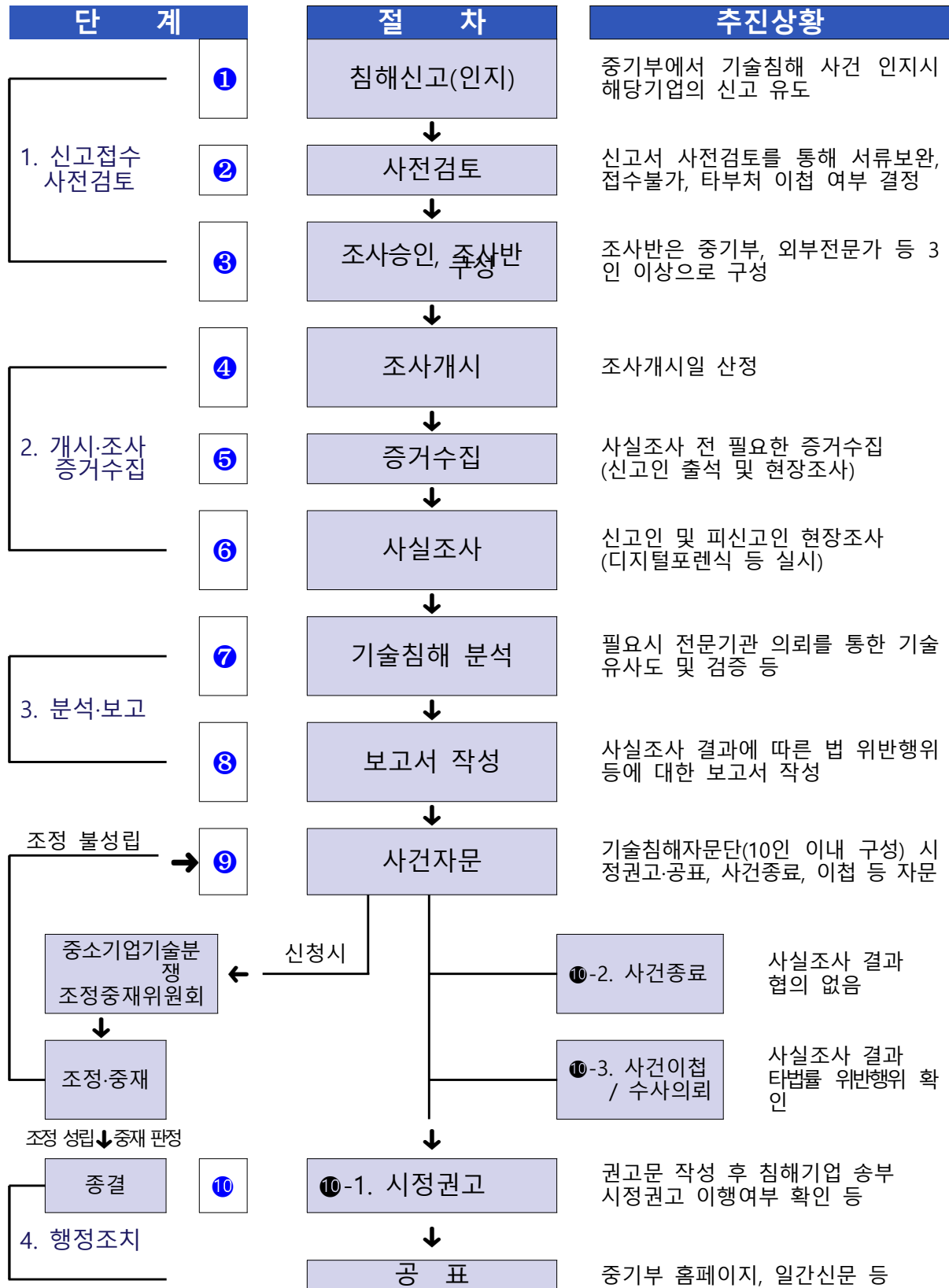
- 기업간 거래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기술자료 요청을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9%인 약 2,390개사 수준 (모집단 : 30,257개사)



5

기술탈취 행정조사 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6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개요 및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개요

- **(목적)** 기업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협유도,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소, 분쟁대응 비용지원 등으로 피해기업 구제
- **(지원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로 분쟁 해결 지원
 - * (조정) 조정부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당사자간 중재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 의뢰 및 비용 지원	최대 4,500만원

□ 지원현황

○ '15년 이후 총 264건의 접수, 254건 종료, 7건 진행 중 (성립률 49.6%)

구분	접수	진행 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취하	조정중단*	각하**	계
15년	22	-	3	4	7	1	14	-	15
16년	17	-	6	8	14	2	1	-	3
17년	19	-	2	7	9	3	7	-	10
18년	19	-	3	9	12	-	7	-	7
19년	21	-	2	7	9	1	11	-	12
20년	30	-	6	5	11	-	19	-	19
21년	25	-	10	5	15	-	10	-	10
22년	24	-	9	1	10	1	13	-	14
23년	33	-	12	7	19	1	13	-	14
24년	20	-	4	3	7	-	13	-	13
25년	34	7	3	5	8	-	13	6	19
계	264	7	60	61	121	9	121	6	136
비율 (%)	-	-	49.6%	50.4%	100.0%	6.8%	89.5%	3.8%	100.0%

* 조정중단 :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 각하 :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